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손지선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이수정*

경기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인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살인에 초점을 두어 가족살해 가해자가 가지는 특성을 검토해 본다. 가족살해를 설명하는 범죄원인론적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가족살해에 관한 범죄학적 시각이 형사사법체계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살해 유형별 양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이 양형에 주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족살해 가해자에게서 보고된 실행전과 횡수는 일반적인 범죄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보다 월등히 적어서 이들이 범인성에서 일반살해 가해자와는 이질적인 심리적 역동을 경험한다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일반살해보다 가족살해의 경우가 더 높아서 가족살해와 가해자의 성별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님을 추정하게 하였다.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형의 가중요인이 되는 외도 변수에 대하여서는 추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가족살해, 양형, 성역할기준

별거 중이던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사제 권총으로 부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연합뉴스, 2006년 4월 19일), 별거 중인 부인과 살고 있는 두 아이들을

영화를 보여준다고 데려와 차에 태운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비정한 아버지도 있으며(MBC뉴스, 2006년 4월 4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빚을

*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lee@hanmail.net

값기 위해 다른 또래집단과 자신의 집에 가서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아들도 있다(쿠키뉴스, 2004년 4월 15일). 우리는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동에 있어서, 흔히 정신병이 있는 살인마가 혼자 있는 희생자를 비밀스럽게 덮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대부분의 살인사건에서는 배우자, 친구, 지인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개인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의 공식보고에서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14%)이거나 지인(34%)일 경우가 48%로 나타났다(FBI, 2000). 이런 경향은 한국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4년과 2002년의 살인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친족은 각각 27%, 친구는 12%에서 14%로, 지인은 15%에서 18%로 나타나서 친족, 친구, 그리고 지인을 합하면, 54%-59%(최인섭, 2003)로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비해서는 가까운 사람이 살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친족’은 동거친족이나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었고, ‘친구’는 친구나 애인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가까운 사이에서의 살인이 발생하는 비율은 39%-41%나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처럼 살인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차단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범죄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악랄하다고 여겨지는 행위가 ‘왜’ 심리적·정서적인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인 가족 내 구성원이나 애인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는 우리의 의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가족구성원을 살해하는 사건에서 준비속살해의 경우, 그 원인론적 면에서 대부분 정신적 이상에 기인한 행동일 것이라 자주 간주되어 왔다. 아마도 이는 부모나 자식을 죽였다는 행위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수용되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 갈등을 진화론적인 ‘적응’이라는 대전제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준비속살해의 원인론을 정신병으로만 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배우자 간 살해의 경우에도 부인살해의 경우는 남성의 ‘적응’을 위한 성적 독점욕에 기인한다는 진화심리학적 시각이 적용될 수 있다(Daly & Wilson, 1980). 하지만 남편살해의 경우에는 진화심리학적 설명보다는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갈등상황이 폭력

을 넘어 살인으로 전이, 확대된다는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범죄 원인론적 시각은 가족살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형사사법 상의 판단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이 같은 범죄원인론적 시각이 형사사법기관의 현장종사자들의 판단과정에 명시적으로 또한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양형 상의 차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족살해 가해자의 개인적 변수 중에 성별 변수가 양형과 가지는 관련성에 대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설명되어지는 이론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도 가족살해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준비속살해와 부인살해

준속살해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의 양육투자이론(Trivers, 1972)에 따르면, 자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성은(일반적으로 포유류에서는 암컷은), 아주 적은 투자만으로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성(일반적으로 수컷)에 비해 양육에 대해 투자하는 기간이 길다. 임신·출산·수유기간이 지나고도, 일반적 사회적 통념상의 여성의 역할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시간과 노력과 봉사는 아버지의 그것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자녀와 어머니가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갈등이 더해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준비속살해를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애증이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자식 간의 이해관계에서 통제하려는 부모와 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자아를 가지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진화심리학적 면에서는 가정해 볼 수 있다.

비속살해는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행사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논한다(Daly & Wilson, 1980). ① 부모가 유전적 부모가 아닐 경우, ② 아버지임(paternality)이 확실치 않을 경우, ③ 자식이 불구이거나 열등한 자질을 가질 경우, ④ 가난 등으로 자식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등의 환경적 이유로 자식의 번식에 대한 기대를 열악하게 할 경우가 해

당된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자신의 유전자가 전달되고 변형될 번식가치와 자식살해는 연관되어 있으며, 자식에게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심리기제를 ‘차별적 부모의 심려’(differential parental solicitude)라고 정의한 바 있다(Daly & Wilson, 1980). 즉, 자식의 번식가치는 비속살해를 일부 설명하는 진화심리학적 사고가 바탕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자식의 번식가치를 포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번식가치도 철회되어지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적응이론에 타당하다. 따라서 자식을 죽이는 행위는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며, 자식을 죽이고서 자살하는 부모를 진화심리학적 바탕에서 이해할 수 있다. Daly와 Wilson(1988, 1998)은 비속살해 친부모가 비속살해 양부모보다 자식을 살해한 후에 더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다른 심리기제를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 따라 설명한다.

배우자 간 살해는 지금까지 가족살해의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관심이 집중되었던 연구이어서, 가족살해에 대해 연구되어진 선행논문들은 주로 배우자 간의 살해를 중요히 다루고 있다(Daly & Wilson, 1988; Wolfgang, 1958; Wilson & Daly, 1985, 1993; Wilson, Johnson, & Daly, 1995; Saunders & Browne, 2000; Shackelford, 2001; Shackelford, Buss, & Peters, 2000). 배우자살해 중 부인살해와 남편살해는 다르게 설명되어진다. 부인살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남성의 성적 독점욕이나 소유욕에 대한 논의가 많다. 즉 살해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부인살해는 자신의 유전적 자손(genetic posterity)을 남기기 위한 부인의 성적 정절(sexual fidelity)과 이에 따른 부성(paternality)이 불확실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통제욕구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부인에 대한 성적 질투심(sexual jealousy)이나 부인에 대한 소유욕이나 지배욕(1)

또는 이러한 욕구의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유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Daly & Wilson, 1988).

여성주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남편살해

진화론적 시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남편의 성적 절정이나 남편에 대한 소유욕은 남편살해 가해여성의 살인동기로는 거론되지 않는 점에서 부인살해와 남편살해는 다르게 해석되어진다. 이는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오랫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써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김영희 등, 2004; 이수정 등, 2005; Browne, 1987; Campbell, 1992)에 기인한다. 또한 남편이 가지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가 부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Whitehurst, 1974; Rosenbaum & O'Leary, 1981). 폭행이 심화되면 살인까지 갈 수가 있고, 중(重)폭력을 살인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죄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폭력행동은 배우자 간 살해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여성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그 피해대상이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더 많다. 즉 여성가해자의 비율이 일반살해에서보다 가족살해의 경우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가해자의 성비율을 비교한 연구(Wilson & Daly, 1992)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 주어서 가족살해에서 일반살해보다 높은 여성가해자의 비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가정 밖에서보다 가정 안에서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갈만큼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가정케 한다. 따라서 여성가해자의 경우는 남성가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 외부적으로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정 내부적으로는 성역할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이 여성(부인)에게 가져오는 변수들, 예를 들면 양육이나 가사에 대한 부담, 결혼의 의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이질적인 이해, 여성의 경제적인 능력유무, 신체적 열악함 등과 공발생한다.

1) 부인에 대한 독점욕(proprietariness)이라함은 남편이 부인에 대해 가지는 심리기제로써, 주로 성적독점욕이나 소유욕을 의미한다. Daly & Wilson(1992)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들의 논문에서는 *proprietariness*라는 용어에 대해 남성이 특정 여성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새들이 자신의 영토에 대해서 주장하듯이 *proprietary* (전매의; 소유의; 소유물)로써 부인에 대해서 권리와 자격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설명되어진다.

존비속살해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

정신장애

배우자 간 살해를 제외한 존비속살해에서는 정신적 질병여부를 주요 원인으로 연구하였다. 존속살해는 가정 내 학대와 연관되어 연구된 경우가 많으며, 피해대 아동의

유형에 대해 분류한 연구도 있다. 첫째 아동기 학대로 인한 제어할 수 없는 충동, 둘째 가해자의 정신적 질병, 셋째, 강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피학대 아동의 존속살해와 관련된 심리요인이다(Heide, 1992). 즉, 존속살해 가해자의 많은 경우가 신체적, 언어적 때로는 성적 학대에까지 노출되어서 다른 대안적인 탈출구나 위로를 찾지 못한 채, 지속적 공포의 가정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로써 부모를 살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문현상(lockage phenomenon)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론은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에 있어서 가정 내 폭력이라는 학대상황에서 '탈출'하려는 청소년이, 자살관념을 가지거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 대(對) 부모를 살해해 버리는 상황적 시나리오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맞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이러한 존속살해 청소년에 대한 법정에서의 정당방위(self defense)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부모의 비속살해 특히 어머니의 비속살해의 경우는 범행 당시의 가해자의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빈번히 언급된다(Daly & Wilson, 1988; d'Orban, 1979; Bourget & Bradford, 1990; Fonagy & Target, 1995; Glasser, 1986; Harder, 1967; Mitchell, 1993; Resnick, 1969). 비록 살해 가해자의 성별 비율에 대하여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의한 비속살해가 아버지보다 더 많다고 보고되기도 하고(Bourget & Bradford, 1990; Copeland, 1985; Harder, 1967; Jason, 1983; Kaplun & Reich, 1976; Myers, 1970; Resnick, 1969),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에 의한 비속살해가 더 많거나 같다고 보고되기도 한다(Adelson, 1961; Wright & Leroux, 1991).

범죄력

Marleau와 Webanck, (1997)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폭력범죄 비율(violent crime rate)²⁾이 존속살해 비율(parricide)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58, p<.05$), 다른 형제살해($r=.40, n.s.$)와 자식살해($r=.35, n.s.$)와도 폭력범죄비율은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

2) 폭력범죄는 과실치사를 포함한 살인(homicide), 폭행(assault), 성범죄(sex offense), 납치(abduction), 강도(robbery) 등의 강력범죄로 분류한다(Canadian Crime Statistics, 2003).

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거리 범죄자(street criminals)가 재원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Megargee 가설(1982)³⁾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범죄력이라는 특성은 가정 내 살인행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속살해를 정신병으로만 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에 포함되었던 자료는 개인자료가 아니라 집단자료, 즉 지역별 범죄통계였기에 개인별 범죄력과 가족살해 발생과의 관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비속살해의 경우 가해어머니가 수감되는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보내지는지에 대한 연구(Laporte, Poulin, Marleau, Roy & Webanck, 2003)에서는 NGRI(Not Guilty by the Reason of Insanity)판정을 받아 정신병원(forensic hospital)에 수감되는 여성의 주요변수가 정신적 질병 때문임을 지적한다. 반면에 수감되어진 여성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변수는 낮은 사회경제적 신분($X^2=4.43, df=1, p<.05$), 전과여부($X^2=5.37, df=1, p<.05$), 그리고 약물남용여부($X^2=3.94, df=1, p<.05$)로 나타났다. 특히 비속살해 여성 중에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여성은 전과가 전혀 없었다. 여기서 낮은 사회경제적 신분은 남성의 비속살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수로 가해 아버지는 가난하고 비주류의 노동자 계층인 경우가 많았다(Mensah, 2003). 이와 같은 사실은 비속살해의 경우도 정신적 질병을 원인으로만 귀인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성별과 양형

성역할 기준에 따른 양형 기준을 논하는 맥락에서 여성에게는 또 다른 판결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서 다른 기준, 즉 더 관대한 기준으로 형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Moulds, 1978).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사도'(chivalry) 혹은 '온정주의(paternalism)적' 견해⁴⁾가 그것이다. 그러나 기사도나 온정주의에 입각

3) Megargee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들(street criminals)이 자원이나 신분 혹은 다른 사회적 강화요인을 얻기 위해 자발적·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반면에 가정폭력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출된 분노로써 폭력을 사용한다고 정의한다.

4) chivalry와 paternalism은 여성범죄자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표 1. 성별에 따른 양형에 대한 Regression Coefficient(b), Beta Weights(B), Zero-Order Correlations(r)

독립변수	여 성				남 성			
	r	b	(s.e.)	B	r	b	(s.e.)	B
결혼관계 (Married)	.223**	1.255	(1.933)	.050	-.073	-1.034	(1.620)	-.041
자식의 수 (children)	-.158*	-1.593	(1.690)	-.069	-.061	-1.173	(1.537)	-.048
직업유무 (employed)	.155**	1.133	(.474)*	.175	-.062	.183	(.366)	.027
범죄력 (prior)	-.011	.261	(1.752)	.011	.083	.888	(1.256)	.041
범죄의심각성 (offense)	.526**	.301	(.070)***	.358	.312***	.015	(.059)	.016

※ 자료 : Crew(1991)의 재구성⁵⁾

* $p < .05$, ** $p < .01$, *** $p < .0001$ (s.e.) regression coefficients의 표준오차

한 판대한 처벌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성의 범죄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기준에 어긋난다면 이 여성은 기사도나 온정적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호의적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더 심각한 범죄자로서 인식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엄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악녀가설(evil women hypothesis; Bernstein, 1977; Bowker, 1978; Rasche, 1975)라고 지칭한다. Nagel과 Hagan(1982)은 이러한 이중적인 양형기준을 논하면서 기사도/온정주의(chivalry/paternalism)가설과 악녀(evil women)가설은 여성범죄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논리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여성의 범죄가 여성의 성역할 기준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되면 기사도나 온정주의에 입각한 양형이 가능하나, 만약 여성의 범죄가 여성적이지 않다면(unfeminine),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같거나 더 심한 양형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여성범죄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가정을 고려할 시에 가족을 살해한다는 것은, 여성의 통념

적인 기준과 상당히 동떨어진 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다 그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낙인은 여성가해자에게 더 심한 양형을 받는 중요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의 경우, 음주나 약물경험 또는 범죄력이 있다는 것이 수감되는 여성들의 주요 변수로써 나타나서 이러한 여성들은 자식을 죽인 남성들보다 더 심하게 처벌되는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었다(Laporte et al., 2003). 또한 남성가해자와 여성가해자가 선고받는 양형의 차이가 연구된 바 있는데 양형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Crew, 1991).⁵⁾

5) Crew(1991)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인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1980년에 Kentucky주에 수감 중인 여성중범죄자 108명과 남성중범죄자 2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 PSI)와 개인면담을 통한 자료(narrative description)를 가지고 이른바 양적,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인종, 결혼관계, 고용여부, 자식의 유무와 같은 피고인의 법 외적(extralegal) 요인뿐 아니라 범죄력, 범죄의 심각성, 기소의 강도와 같은 법적(legal)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 요인들이 양형이라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6) 종속변인을 양형의 년 수로 지정하고, 독립변인으로는 Sex(성별) : 여성0/ 남성1, Race(인종) : 백인0/ 흑인1, Married(결혼관계) : 미혼0/ 기혼1, Children : 피고인에 딸린 자식의 수, Employed(직업유무) : 없음0/ 있음1, Priors(범죄경력) : 사전중범죄 선고 수, Offense : 범죄의 심각성으로 Sellin-Wolfgang의 심각성 척도(range=0에서 71), Codefendant(공동피고인) : 없음0/ 있음1, Charges(기소의 강도) : 법령에서의 기소된 년 수로 지정함.

로 판단한다. Chivalry는 여성에게 해를 주는 것을 꺼려하고 나아가 여성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다. Paternalism은 여성은 아이와 같아서 보호의 대상이며, 자기의 행동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여성에 대한 판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도하지만, Mould(1978)는 그의 미적 면에서 paternalism이 더 여성을 비하해서 판대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표 1에서 보면 양형 길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인 경우는 결혼했는지 미혼인지($r=.223, p<.01$), 자식이 몇 명인지($r=-.158, p<.05$), 그리고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r=.155, p<.001$)의 변수에서 양형의 길이와 변수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인 경우는 위 변수들이 양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가해여성이 기혼일수록, 자식이 없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있을수록 긴 양형과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가정케 한다. 이것을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가해여성은 미혼일수록, 자식이 있을수록, 그리고 직업이 없을수록 짧은 양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두 개의 변수보다 특히 직업의 유무라는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17.5%에 달하는 설명력을 가진 변수라는 것이 들어났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care makers)이라는 전통적·통념적 여성의 성역할에서 벗어난다고 인식될 수 있어서 이것이 긴 양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범죄심각성은 여성에게 양형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beta=.358, p<.001$)로써 결과한 반면에 남성에게는 유효한 변수로써 결과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살인, 더욱이 가족을 죽인다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더 증대시킨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성별에 따른 양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양형기준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의 ‘일’ 예컨대 육아·양육·가사를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양형이 조정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여성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미의 양형의 조정이거나 혹은 집행유예 판결인지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성의 성역할 기준에 대한 고찰이 양형이라는 결과적인 측면을 논의할 시에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임을 제안해준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판단하는 시각에 있어서도 형사사법의 판단과정 안에서 성별에 따라 이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선행논문에서 존비속살해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정신적 질병이나 배우자 간 살해를 설명하는 진화론적 ‘적응’이라는 이론적 설명에의 중심을 가지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반사회성, 구체적으로는 범죄력 여부를 가족살해 가해자에게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 이유는 비록 살인이 전체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는 하더라도 그 대상이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면 개인의 폭력적 사고나 행동, 더 나아가서는 전과 여부가 주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Marleau와 Webanck(1997)의 연구에서도 캐나다의 존속살해 비율(parricide rate)과 폭력범죄 비율(criminal violence rate)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58, p<.05$), 다른 형제살해($r=.40, n.s.$)와 자식살해($r=.35, n.s.$)와도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을 살해한다는 것이 일반살해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족살해 가해자의 몇몇 변수들을 부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가족 중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이 그 행위의 심각함이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살해에 부과된 양형보다 가족살해에 부과된 양형이 더 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념적 여성의 역할에서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 특히 남편을 죽인다는 것이 가정적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죄로 인식되는 경향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남편살해가 존속살해, 비속살해, 부인살해에서의 양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해서 셋째로 여성의 성역할 기준, 가부장적 사고, 그리고 진화론적 통념에서 귀인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여성의 기준이 악녀(evil women) 가설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성별이 가족살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가 사회적 통념과 맞물려 양형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가설

1)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죄율은 존속살해사건의 발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Marleau & Webanck, 1997),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개인변수들에 있어서도 존속살해인범의 경우 전과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2)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양형은 다를 것이며 부인살해와 남편살해의 양형은 다를 것이다. 가족살해는 일반살해보다 가족을 죽였다는 것으로 더 중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가해자의 성은 가족살해의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로 나타날 것이다. 가족을 죽인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통념적인 성역할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기사도나 온정주의적 기준보다는 악녀가설에 의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4)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유효한 변수로 나타날 것이다. 진화심리학적 견지에서 보자면 부부 간의 성적 정절(fidelity)은 주로 부인의 성적 정절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배우자 간 살해에서의 부인의 외도는 성적 정절을 위배한 것으로서 남편살해의 양형판단에 가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부인살해의 양형판단에 별다른 가중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전체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2000년도에 전국의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었던 수감자 자료 9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자료 중 죄명이 살인에 해당하는 사건자료만 따로 추출한 것이었다. 당시 전국의 교정시설 중 치료감호소를 제외한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심사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전국규모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었다. 이 자료에는 각 소의 수형 인원을 고려하여 약 1.5% 할당 표집된 수감자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바, 재소자들의 성별과 연령 등 각 개인의

표 2. 조사대상자의 수감시설 소재지

수감시설소재지	N(%)
서울/경기권	32(8.27)
충청권	120(31.01)
강원권	39(10.08)
경상권	106(27.39)
전라권	89(23.0)
제 주	1(0.26)
전 체	387(100.0)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범죄유형 등의 범죄관련특성들이 교정시설 기록으로부터 수집되어 있었다. 원 자료에는 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위험성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수집되었고 초기 분류심사 시 인성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변수들은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2건 중에 죄명이 살인에 해당하는 387건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표 2에는 조사대상자의 수감시설 소재지에 대한 빈도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교도소의 소재지 및 수용인원에 따라 충청권, 경상권의 재소자들이 상대적으로 자료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살해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사건 자료 중 가족이 가해자 및 피해자였던 사건은 총 94건으로 살인으로 수감되었던 대상자들 387명 중 24.3%에 달하였다. 각 살해별 빈도와 비율을 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부인을 살해한 남성은 29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29명(7.5%)으로 각각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 시부모를 포함하

표 3. 가족살해 조사대상자의 빈도와 비율

종류	남성	여성	N(%)
존속살해	12(3.8)	4(5.9)	16(4.1)
비속살해	8(2.5)	12(17.6)	20(5.2)
부인살해	29(9.1)	0(0.0)	29(7.5)
남편살해	0(0.0)	29(42.6)	29(7.5)
일반살해	269(84.6)	23(33.8)	293(75.6)
전 체	318(100.0)	68(100.0)	387(100.0)

7) 처음부터 청구여자교도소에서도 여성재소자들 중 일정 수를 선별하여 표본에 포함시켰었기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 일반살인범 집단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여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16명(4.1%)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12명(3.8%)이며 여성은 4명(5.9%)으로 나타났다. 자식을 살해한 사람은 20명(5.2%)이었다. 이 중 남성은 8명(2.5%)이며 여성은 12명(17.6%)으로 나타났다.

측정 변수

양형

본 범행에 대한 형기를 개월 수로 나타낸 것이다. 240개월이 가장 길며 여기에는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

설명변수 중에서 범죄의 심각성은 연구자가 자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임의로 정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심각성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우선적인 변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계획성 여부이다. 따라서 변수 중 ‘시체의 훼손 및 유기’를 한 경우에는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고의성을 가정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범죄의 유죄판단에 가장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심각성 변수에 2를 주어 ‘강’으로 정의하였다. 시체의 훼손 및 유기가 없을 경우, 살해 장소가 ‘외진 곳’이나 ‘여관’인 경우는 장소 자체가 갖는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가정해 볼 수 있기에 심각성 변수에 1을 주어 ‘중’으로 정의하였고, 시체의 훼손 및 유기가 없으면서 살해 장소가 ‘집, 상가, 자동차 내’ 등으로 일상적인 장소일 경우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각성 변수에 0을 주어 ‘약’으로 정의하였다.

실형 전과회수, 결혼 여부, 자식유무, 성별,

실형 전과회수는 그대로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혼 여부는 ‘결혼’인 경우가 0, ‘미혼’인 경우가 1, ‘별거나 사별이나 이혼’은 2로 정하였다. 자식은 없을 경우 0, 있을 경우 1로 정하였고, 여성은 0, 남성은 1로 정하였다.

외도 여부

배우자 간 살인의 가장 주요한 살인 동기는 외도사실 여부이다. 연구자는 판결문과 탄원서 상 모두에서 나타나는 외도사실 여부를 다 포함하여 외도 없음은 0, 가해자의 도는 1, 피해자의도는 2를 주었다.

연구자료 분석

SPSS 12.0을 이용해 수집된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살해의 일반살해와의 실형 전과회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살해에서 결과하는 각 살해별 양형의 차이를 비교함과 동시에 일반살해와 가족살해의 양형의 차이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살해의 각 살해에서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살해에서 외도에 따른 양형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성비율과 연령

표 4에서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우선 성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살해에서는 가해남성은 52.1%이고 여성이 47.9%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살해에서는 가해남성은 91.8%로 대부분이고 여성은 7.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살해의 경우 일반살해보다 월등하게 여성가해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들은 2000년 당시 시설수용을 명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대상자들이었기에 과실치사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살인사건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적 살인(Criminal Homicide)에 비하여 가족살해의 경우 여성가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외국 연구(Wilson & Daly, 1992)의 경향성은 국내 자료에서도 부분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은 가족살해 가해자를 보면, 우선 40세부터 49세까지의 비율이 57.45%로써 가장 많아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젊은 가해자도 22.34%로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가족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는 없으나, 40대 이상의 비율이 77.66%로써 긴 기간 동안의 가족 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케 하였다. 반면 일반 범죄적

표 4.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성비율, 연령

		가족살해	일반살해
		N(%)	N(%)
성별	남성	49(52.1)	269(91.8)
	여성	45(47.9)	23(7.8)
	전체	94(100.0)	292(99.7)
연령대	60세 이상	3(3.2)	7(2.4)
	50세 이상	16(17.0)	39(13.3)
	40세 이상	54(57.5)	105(35.8)
	30세 이상	15(16.0)	123(42.0)
	20세 이상	6(6.4)	19(6.5)
	전체	94(100.0)	293(100.0)

살인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은 30세부터 39세까지의 비율이 41.98%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40세부터 49세까지의 비율이 35.84%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50세부터 59세까지의 비율이 13.31%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비율이 51.54%로써 가족살해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20대의 비율이 낮기는 하나 20대와 30대의 젊은 가해자의 비율이 48.46%로써 가족살해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살해에서는 가족살해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가족살해에서는 일반살해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나타났다.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양형

표 5에는 가족살해와 일반살해 가해자의 형기에 대한 빈도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가족살해의 경우 240개월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어서 25.5%로 나타났다. 180개월과 84개월이 각각 1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세 번째가 144개월을 받은 경우로 12.8%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이 120개월로 8.5%로 나타났으며, 96개월이 7.4%로 나타났다. 가족살해 가해자의 경우는 15년 이상 장기 간 수감되는 경우가 39.3%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반면에 5년 미만의 수감명령을 받는 경우는 13.3%에 불과하였다.

한편 일반살해의 경우도 240개월을 선고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24.9%의 비율을 나타냈다. 15년 이상 수감되는 경우가 30.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하지만 5년 미만의 수감명령을 받는 경우가 56.5%로 과반수

표 5. 가족살해와 일반살해 가해자의 양형

		가족살해		일반살해	
		개월 수	N(%)	개월 수	N(%)
				3	1(0.3)
				6	6(2.0)
		8	1(1.1)	8	31(10.6)
				10	20(6.8)
		12	1(1.1)	12	47(16.0)
				14	1(0.3)
		18	2(2.1)	18	12(4.1)
		24	1(1.1)	24	11(3.8)
				30	6(2.0)
				36	11(3.8)
				42	1(0.3)
		48	3(3.2)	48	6(2.0)
				54	1(0.3)
		60 (5년)	4(4.3)	60 (5년)	7(2.4)
				63	1(0.3)
		84	13(13.8)	84	8(2.7)
				90	1(0.3)
		96	7(7.4)	96	3(1.0)
		120	8(8.5)	120	9(3.1)
		144	12(12.8)	144	13(4.4)
		156	1(1.1)		
		180 (15년)	13(13.8)	180 (15년)	14(4.8)
				204	1(0.3)
				216	1(0.3)
		240	24(25.5)	240	73(24.9)
		전체	90(95.7)	전체	285(97.3)

이상을 차지하여 가족살해 가해자의 13.3%의 비율과 대조적이다. 가족을 살해한다는 것이 일반살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존비속살해의 성비율

다음으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가해자들의 성비율을 산출하였다. 존비속살해법 중 남성은 75%가 부모를 죽인 경우이고 40%가 자식을 죽인 경우이다. 반면에 여성은 25%가 부모를 죽인 경우이고 60%가 자식을 죽인 경우이다. 어머니에 의한 자식의 살해행위가 아버지보다 많다고 보고되는 연구들(Bourget & Bradford, 1990; Copeland, 1985; Harder, 1967; Jason, 1983; Kaplun & Reich, 1976; Myers, 1970; Resnick, 196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6. 존비속살해 가해자의 성비율

가해자	남성	여성	N(%)
존속살해	12(75.0)	4(25.0)	16(100.0)
비속살해	8(40.0)	12(60.0)	20(100.0)

판결문과 탄원서 상에서의 살인동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발생 당시를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인의 동기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판결문에서 나타난 살인동기와 탄원서에서 나타난 살인동기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에는 배우자 간 살해에서 판결문 상의 살인동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 부인살해의 경우 41.4%에 달하는 남성(남편)이 부인의 외도 때문에 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20.7%로써 부인의 모욕에 격분한 경우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부인의 결별요구에 격분한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살해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이 피해자의 모욕, 폭행에 격분한 경우가 37.9%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31.0%로써 부인 자신의 외도로 인한 남편살해로 나타났다. 세 번째가 남편의 지속적 학대로 인한 살인으로 13.8%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외도 관련 배우자 살인’은 해석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표 8에서 보여주는 탄원서 상의 살인동기와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판결문 상에는 여성의 9명(31.0%)이 외도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나타나지만 탄원서 상에서는 여성자신의 외도로 인해 남편을 죽였다는 여성은 단 1명뿐이다. 다시 말하자

표 7. 배우자 간 살해에서 살인동기(판결문 상)

판결문 상 살인동기	N(%)	
	부인살해	남편살해
피해자의 모욕, 폭행에 격분하여	6(20.7)	11(37.9)
피해자의 결별요구에 격분하여	5(17.2)	0(0.0)
피해자의 외도	12(41.4)	1(1.7)
가해자의 외도 관련 내연살인	1(1.7)	0(0.0)
가해자의 외도 관련 배우자살인	0(0.0)	9(31.0)
금전 목적	1(3.4)	2(6.9)
피해자의 지속적 학대	0(0.0)	4(13.8)
빈곤/우울	0(0.0)	1(3.4)
기 타	4(13.8)	1(3.4)
전 체	29(100.0)	29(100.0)

표 8. 배우자 간 살해에서 살인동기(탄원서 상)

탄원서 상 살인 동기	N(%)	
	부인살해	남편살해
피해자의 모욕, 폭행에 격분하여	3(10.34)	8(27.59)
피해자의 결별요구에 격분하여	5(17.24)	0(0.00)
피해자의 외도	9(31.03)	2(6.9)
가해자의 외도 관련 배우자살인	0(0.0)	1(3.45)
금전 목적	0(0.0)	1(3.45)
피해자의 지속적 학대	0(0.0)	3(10.34)
빈 곤	0(0.0)	1(3.45)
살인범행 사실부인	2(6.9)	4(13.79)
음주나 환각	6(20.69)	3(10.34)
피해자의 공격에 정당방위	0(0.0)	1(3.45)
공범의 회유나 협박	0(0.0)	4(13.79)
기 타	4(13.79)	1(3.45)
전 체	29(100.0)	29(100.0)

면 살인동기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이함은 ‘부인의 외도’는 가해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법체계에서 주요한 살인동기로 지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8에서는 배우자 간 살해에서 탄원서 상의 살인동기에 대해 설명해준다. 부인살해는 부인의 외도가 가장 많은 31.03%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음주나 환각으로 20.69%이었다. 피해자의 결별요구에 격분한 경우가 17.24%로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모욕에 격분한 경우가 10.34%로 네 번째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살해는 남편의 모욕과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27.5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범행사실 부인과 공범의 회유나 협박이 각각 13.79%로 나타나 두 번째이고,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와 음주나 환각이 각각 10.34%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네 번째가 남편의 외도는 6.9%로 나타나서, 31.03%로 가장 많은 동기로 지목되는 부인살해와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진화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적응’을 위한 성적 독점이나 소유욕은 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만 가정할 수 있었다.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실행 전과횟수

표 9에서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실행 전과횟수의 빈도와 비율을 보면, 건수가 1건인 경우가 가족살해와 일반살해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서 각각 85명(90.4%)과 120명(41.0%)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살해는 2건이 6명(6.4%), 3건이 2명(2.1%), 4건이 1명

표 9.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실형 전과횟수

실형 전과횟수	건수	가족살해	일반살해
		N(%)	N(%)
	1	85(90.4)	120(41.0)
	2	6(6.4)	40(13.7)
	3	2(2.1)	31(10.6)
	4	1(1.1)	26(8.9)
	5	0(0.0)	30(10.2)
	6	0(0.0)	14(4.8)
	7	0(0.0)	12(4.1)
	8	0(0.0)	4(1.4)
	9	0(0.0)	5(1.7)
	10	0(0.0)	3(1.0)
	11	0(0.0)	1(0.3)
	12	0(0.0)	1(0.3)
	13	0(0.0)	1(0.3)
	15	0(0.0)	1(0.3)
	전체	94(100.0)	289(98.6)

(1.1%) 순으로 나타나서 거의 대다수의 가족살해 가해자가 본 건으로 1건인 전과횟수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일반살해의 경우는 1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건이 40명(13.7%), 3건이 31명(10.6%), 5건이 30명(10.2%), 4건이 26명(8.9%), 6건이 14명(4.8%), 7건이 12명(4.1%) 순으로 나타나서, 전과횟수가 1건에서 15건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에게서 가족살해 가해자는 일반살해 가해자에 비해서 더 낮은 실형 전과횟수를 보여주므로 가정 내 폭력은 거리범죄자들의 폭력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Megargee(1982)가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가족살해 가해자의 범죄력의 경향성은 일반살해와 달랐다.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의 양형과 가족살해의 각 살해별 양형

가족살해와 일반살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양형의 경향성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았다(표 5).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반살해에서 96.32(97.20)인데 비해서 가족살해는 146.36(70.56)으로 나타나고 그 차이도 유의미해서 ($t=4.521, p < .001$), 일반살해에 비해서 가족살해가 더 심한 양형을 받는다는 것을 본 자료에서는 증명하였다.

가족살해의 살해별 양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보면, 남편살해가 188.44(63.04)로 가장 긴 형을 선고받았

표 10. 살해별 양형

살해 종류	N	M(SD)
존속 살해	16	160.50(78.86) ^{ab}
비속 살해	18	122.44(72.32) ^{ab}
부인 살해	29	114.21(48.68) ^{ab}
남편 살해	27	188.44(63.04) ^b
일반 살해	285	96.32(97.20) ^a
전 체	375	108.33(93.90)

주 : a, b, c 사후검정결과 서로 다르게 표기된 평균 간에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고, 그 다음이 존속살해로 160.50(78.86)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는 비속살해로 122.44(72.32)로 길었으며, 부인살해가 가족살해 중에서는 가장 짧은 평균을 보여주어서 114.21(48.68)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 86)=7.438, p<.001$). 사후검증(Scheffe)결과, 가족살해 내에서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에서 양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남편살해와 비속살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결국 남편살해가 부인살해와 비속살해에 비해서 양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결과하였다. 특히 남편살해여성(부인)이 가장 긴 형을 받았고 부인살해남성(남편)이 가장 짧은 형을 받았다.

표 10에는 일반살해를 포함해서 본 양형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일반살해가 어떠한 가족살해보다도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아서 96.32(97.20)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 370)=8.003, p<.001$). 사후검증(Sheffe)결과 일반살해와 남편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서($p<.001$), 결과적으로 각 가족살해와 일반살해와의 양형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결과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남편을 죽인다는 것이 일반 범죄적 살인보다도 더 가중된 형벌의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살해 가해자의 성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우선 양형과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11). 성별과 양형은 부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서 여성이 긴 양형과 상관성을 보였다($r=-.326, p<.01$). 실형 전과횟수도 마찬가지로 전과횟

표 11.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양형	범죄의 심각성	실형 전과횟수	자녀유무	결혼 여부	성별
양형	1.000					
범죄의 심각성	.122	1.000				
실형 전과횟수	-.246*	-.006	1.000			
자녀유무	.257*	.034	-.066	1.000		
결혼 여부	-.036	-.016	.076	-.018	1.000	
성별	-.326**	.082	.131	-.033	-.070	1.000

* $p < .05$, ** $p < .01$

수가 많을수록 양형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r = -.246, p < .05$). 자녀유무는 양형과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r = .257, p < .05$).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은 양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r = .122, n.s.$), 결혼 여부도 결혼보다는 미혼이, 미혼보다는 별거나 사별이나 이혼이 더 짧은 양형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r = -.036, n.s.$).

다음으로 성별이 양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단 통제변수들로 설정된 범죄의 심각성 변수, 실형을 받았던 전과의 횟수, 결혼 여부, 자녀유무를 제 1 모형에 포함시키고 관심의 대상이었던 성별은 그 다음단계에 포함시켰다.

제 1 모형에서 범죄의 심각성, 실형 전과횟수, 결혼 여부는 유의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모형에서 탈락하였고, 자녀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살아남았다($F(1, 62) = 4.389, p < .05$). 제 1 모형에 예측변수로 포함된 범죄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 2 단계 모형에서 성별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제 2 모형에서 성별변수가 포함되어 자녀유무 변수와 같이 유효한 변수로 그 모형에 추가되었으며($F(2, 63) = 6.113, p < .01$), 이 모형의 설명력이 16.7%에 달하였다.

한편 양형을 예측하는 성별 변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표가 제시되어 있다(표 12). 양형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로써 다른 범죄관련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성 변수가 유효하게 양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F(1, 61) = 7.384, p < .01$), 약 10.1%의 변산을 추가로 더 설명해주었다. 따라서 여성이면 형량이 길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남편살해와 부인살해에서 여성의 외도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13에는 성별과 외도 여부의 교차분석의 결과표와 외도여부에 따른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표가 제시되어 있다. 남편인 경우는 외도 없음이 69.0%(2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부인의 외도에 의한 살인이 27.9%(8명)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남성자신의 외도는 3.4%(1명)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부인의 경우는 여성자신의 외도로 인한 살인이 62.1%(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외도 없음이 31.0%(9명)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살인이 6.9%(2명)에 그쳐서 결국 배우자 간의 살해에서 남성(남편)의 외도는 주요요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여성(부인)의 외도는 주요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도여부에 따른 양형의 길이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를

표 12.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독립변수	R ²	ΔR ²	F 변화량	b	(s.e.)	β	t
1단계	자녀유무	.066	.066	4.389*	42.536	20.317	.257	2.095*
2단계	성별	.167	.101	7.384**	-44.913	16.528	-.318	-2.717**

* $p < .05$, ** $p < .01$ b 회귀계수 (s.e.)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표 13. 외도여부와 양형

가해자	외도 여부			N(%)
	없음	가해자외도	피해자외도	
남편	20(69.0)	1(3.4)	8(27.6)	29(100.0)
부인	9(31.0)	18(62.1)	2(6.9)	29(100.0)
외도여부에 따른 양형의 M(SD)				N
남편	127.80(43.94)	120.00	79.50(48.30)	29
부인	129.33(57.17)	225.00(26.83)	162.00(110.31)	27

보여주었다. 우선 남편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외도로 부인을 살해하였다면 양형이 120.00개월이고 부인이 외도해서 부인을 살해하였다면 양형이 79.50(48.30)개월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외도로 남편을 살해하였다면 양형이 225.00(26.83)개월이고 남편이 외도해서 남편을 살해하였다면 양형이 162.00(110.31)개월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배우자 간 살해동기에서 ‘부인의 외도’는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79.50(48.30)개월로 가장 짧은 양형을 가져오는 반면에 부인이 외도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225.00(26.83)개월로 가장 긴 양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양형의 주요요인인 부인의 외도여부가 양형에 얼마나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부인의 외도가 양형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445, p<.01$). 즉 부인의 외도가 확인될수록 남편의 양형이 짧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인이 가해자일 경우는 양형과 부인의 외도 사실이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492, p<.01$). 즉 부인의 외도가 확인될수록 양형은 길어졌다. 표 14에 제시되어 있는 양형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표를 보면, 우선 남편이 가해자일 경우 부인의 외도는 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로 나타나서($F(1, 27)=6.649, p<.05$), 모형의 설명력이 19.8%에 달하였다. 부인

이 가해자일 경우도 부인자신의 외도는 형을 예측하는데 남편의 경우보다 더 유효한 변수로 나타나서($F(1, 25)=7.974, p<.01$), 24.2%에 달하는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남편의 외도,’ 즉 남편자신의 외도사실이 있으면서 부인을 살해하였거나(1명), 부인에게 살해당하는(2명) 이 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 빈도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논 의

인간이 규정한 가장 흉악한 범죄 중 하나는 살인일 것이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시대에 안겨주는 충격이 크다. 가족 간 살해를 보는 진화심리학적 견해에서는 준비속살해와 배우자 간 살해를 설명하는 몇몇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범죄원인론적 시각은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정신병으로만 귀인하는 원인론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특히 진화론에서의 혹은 통념적 성역할에서의 기준이 형사사법체계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에 내재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여서, 이러한 기준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작용할 수도 있다는 데에 의문을 가져보았다.

가족살해가 일반 범죄적 살인에서보다 여성가해자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겪는 갈등이 가정 밖에서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가족살해 가해자의 연령대가 일반살해 가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이상의 비율이 상당부분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과(過)통제되어진 교질적인 상호작용과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 집중적으로 살인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보게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적 살인에서와는 다른 심리적 역동성이 가족살해에는 내재되어 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이것은 실험전과 횡수의 경향성에서도 드러나는데, 가

표 14. 양형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표

가해자	독립변수	R ²	ΔR ²	F 변화량	b	(s.e.)	β	t
남편	부인의외도	.198	.198	6.649*	-23.856	9.869	-.445	-2.578*
부인		.242	.242	7.974**	52.161	18.471	.492	2.824**

* $p<.05$, ** $p<.01$ b 회귀계수 (s.e.)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족살해 가해자의 실행전과 횡수는 일반살해 가해자의 실행전과 횡수보다 적었으며 그 분포도 다양하지 않고 본 건으로만 수감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폭력범죄 비율과의 정적 상관이 본 연구대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가족살해 가해자는 일반살해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중에서 남편살해는 가장 긴 형을, 부인살해는 가장 짧은 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설명기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남편살해의 경우 대부분 공범이 존재한다거나 부인살해의 경우 대부분 남편의 만취 중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하는 설명들이 양형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 또한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남편살해의 많은 사례에서 장기간의 아내학대가 내재한다거나 다수 사례에서 남편살해의 공범이 다른 어린 자녀들이라거나 하는 점(이수정, 서진환, 2005)은 양형의 결정에 성역할에 따른 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의심해보게 한다.

비록 기혼보다 미혼, 미혼보다는 별거나 이혼의 여성이 양형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어서 경제적으로 미흡한 여성에 대한 기사도 혹은 온정주의 (악녀가설의 다른 면인)을 가정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고 자녀유무가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로, 자녀가 있는 것이 양형과 오히려 정적 상관을 보여주어서 전통적인 성역할 기준에 따라 양형이 변동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성이라서 똑같이 가족을 죽였음에도 남성보다 더 긴 형을 받는다는 결과 자체가 꼭 악녀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부인의 외도 사실이 남편이 부인을 죽이는 경우와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경우에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외도한 부인은 형사사법 체제 내에서 악녀로 낙인 지어져 부인의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남편의 경우 더 경감된 처벌을 받도록 한다고 추정하게 한다. 성적 정절(fidelity)이라는 것은 부인과 남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의 영향력보다 부인의

외도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부부 간의 성적 정절은 사실상 여성(부인)들에게 주로 요구되어지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념이 양형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인의 외도로 인한 남편의 부인살해가 가장 짧은 양형을 산출하고 외도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 가장 긴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성적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성(부인)에 대한 사회적 냉랭함을 잘 반영해준다. 한편 남편살해 여성들의 피학대 사실은 판결문 상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현존하는 형사사법 조사절차에서 외도라는 변수는 범행의 주요 동기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피학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가족살해를 진화론과 여성주의적 이론 등에 근거한 가설로만 살펴보고 한 점이다. 가족살해가 존비속살해와 배우자 간 살해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가설에 입각한 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간 살해와 다른 존비속살해를 각 살해별로 구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범주의 심각성이라는 변수는 기존의 척도가 아닌 연구자가 한정된 자료 내에서 변수들을 가지고 조작한 기준이므로, 이 변수와 양형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0년에 수집된 자료로써 재소자들이 수감되어진지는 이보다 오래되어서 최근에 사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변화된 양형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화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선행논문에서도 배우자 살해를 제외하고는 존속살해와 비속살해의 경우는 그 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이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은 아니며, 본 연구가 가족 내 극한 폭력행동인 가족 간의 살해행동에 대해서 가족살해 가해자들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찰해보려고 시도하였고, 이들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형의 길이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노력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 싶다.

참 고 문 헌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 살인범의 특징, 범죄

- 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 치료적 사범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보고서. 손지선 (2005). 가족살해의 특성 : 가해자의 성, 전과, 양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서진환 (2005). 배우자 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면책사유와 관련된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1(69), 93-138.
- 이수정, 서진환, 이운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수형자들의 정신건강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 : 일반, 19(2), 43-62.
- 최인섭 (2003). 한국의 범죄 추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delson, L. (1961). Slaughter of the innocents : a study of forth-six homicides in which the victims were children, *Northern England Journal of Medicine*, 64, 1345-1354.
- Bartol, C. R., & Bartol, A. M. (1998). *Delinquency and Justice : A Psychological approach*(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ernstein, I. N. Kick, E., Leung, J. T., & Schulz, B. (1977). Charge Reduction : An Intermediate Stage in the Process of Labeling Criminal Defendants, *Social Forces*, 56(2), 362-384.
- Bourget, D., & Bradford, J. M. W. (1990). Homicidal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5, 233-237.
- Bowker, L. H. (1978). *Women, Crim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exington, MA : Health.
- Browne, A. (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New York : Free Press.
- Campbell, J. C. (1992). If I can't have you, no one can : Power and control in homicide of female partners, In Radford, J. & D. E. H. Russell (eds.), *Femicide : The Politics of Women Killing*, New York : Twayne, 99-113.
- Copeland, A. R. (1985). Homicide in childhood : the Metro-Dade county experience from 1956 to 1982,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al Pathology*, 6, 21-25.
- Crew, B. Keith. (1991). Sex Differences in Criminal Sentencing : Chivalry or Patriarchy? *Justice Quarterly*, 8(1), 59-83.
- Daly, M., & Wilson, M. (1980). Discriminative parental solicitude : A bi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277-288.
- Daly, M., & Wilson, M. (1988). *Homicide*, Hawthorne, NY : Aldine de Gruyter.
- D'Orban, P. (1979). Women who kill their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560-571.
- Fonagy, P., & Target, M. (1995). Understanding the violent patient : The use of the body and the role of the fa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6, 487-501.
- Harder, T. (1967). The Psychopathology of infanticide :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43(196), 196-245.
- Heide, K. M. (1992). Why kids kill parents, *Psychology Today*, 25(5), 62-68.
- Jason, J. (1983). Child homicide spectrum, *American Journal of Disabled Child*, 137, 578-581.
- Kaplun, D., & Reich, R. (1976). The murdered child and his killers,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3, 809-822.
- Kruttschnitt, C. (1984). Sex and Criminal Court Disposition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172-201.
- Laporte, L., Poulin, B., Marleau, J., Roy, R., & Webanck, T. (2003). Filicidal Women : Jail or Psychiatric Ward?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8(2), 94-98.
- Marleau, J. D., & Webanck, T. (1997). Parricide and Violent Crimes : A Canadian Study, *Adolescence*, 32(126), 357-359.
- Megargee, E. I. (1982). Psychological determinants and correlates of criminal violence. In M. Wolfgang & N. A. Weiner(Eds.), *Criminal violence*, Beverly Hills, CA : Sage, 81-170.
- Mensah, A. (2003). Men who kill their own children :

- parental filicide incidents in contemporary Fiji, *Child Abuse & Neglect*, 27(5), 557-569.
- Mitchell, S. A. (1993). Aggression and the endangered self, *Psychoanalytic Quarterly*, 62, 351-381.
- Moulds, E. F. (1978). Chivalry and Paternalism : Disparities of Treat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ester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1(3), 416-440.
- Myers, S. A. (1970). Maternal filicide, *American Journal of Disabled Child*, 120, 534-540.
- Nagel, I. H., & Hagan, J. (1982). Gender and Crime, Offense Patterns and Criminal Court Sanctions, In N. Morris and M. Tonry (eds.), *Crime and Justice*, 4, Chicago University Press, 91-144.
- Resnick, P. J. (1969). Child murder by parents : a psychiatric review of fil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6, 73-82.
- Saunders, D. G., & Browne, A. (2000).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Ammerman, R. T. & M. Herson (eds.), *Case Studies in Family Violence*, New York :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415-449.
- Shackelford, T. K. (2001). Cohabitation, marriage, and murder : Women-killing by male romantic partners, *Aggressive Behavior*, 27, 284-291.
- Shackelford, T. K., Buss, D. M., & Peters, J. (2000). *Wife killing : Risk to women as a function of age*, *Violence and Victims*, 15, 273-291.
- Trivers, R. (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Campbell, B. (ed.), *Sexual Selection and the Descent of Man*, 1871-1971, Chicago : Aldine de Gruyter, 136-179.
- Rasche, C. E. (1975). The Female Offender as an Object of Criminological Research, In A. Brodsky(eds.), *The Female Offender*, Beverly Hills : Sage.
- Resnick, P. J. (1969). Child murder by parents : a psychiatric review of fil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6, 73-82.
- Rosenbaum, A., & O'Learly K. D. (1981). Marital Violence :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riminal Psychology*, 49, 63-71.
- Whitehurst, Robert N. (1974). *Violence in Husband-Wife Interaction*, New York : Harper and Row.
- Wilson, M., & Daly, M. (1985). Competitiveness, risk taking, and violence : The young male syndrome, *Ethology and Sociobiology*, 6, 59-73.
- Wilson, M., & Daly, M. (1992). Who kills whom in spouse killing? On the exceptional sex ratio of spousal homicide in the United State, *Criminology*, 30(2), 189-215.
- Wilson, M., & Daly, M. (1993). Spousal homicide risk and estrangement, *Violence and Victim*, 8, 3-16.
- Wilson, M., Johnson, H., & M. Daly (1995). Lethal and nonlethal violence against wive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3), 331-340.
- Wolfgang, M. E. (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right, C., & Leroux, J. P. (1991). Les Enfants victimes d'actes criminels violents, *Juristat*, 11, 1-13.

Famicide Offender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for Sentencing

Ji Seun Sohn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Homicide is the most violent crime in every community. However, murder victims are not rarely family members. This study will try to explain spousal homicide, parricide, and filicide under the theories of evolutionary perspectives, and also will try to find out what the counterpart could be against evolutionary versions according to the views of feminism. Especially, sentence length implies that there could be different standard between male offenders and female offenders under the asymmetry structure of our society.

First, this study try to find out correlation between criminal records and famicide offend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famicide offenders did differ against street criminals. It implies famicide offenders could experience different psychological dynamics rather than criminal homicide offenders.

Second, this study also try to figure out the sentence differences between famicide and criminal homicide. And also there is the differences among parricide, filicide, and spousal homicide. Famicide offenders have been sentenced longer sentence than criminal homicide offenders. On the other hand, wife killers have been sentenced the most shortest sentence while husband killers have been sentenced the most longest sentence inside the famicide.

Third, male famicide offenders were sentenced the shorter sentence length than female famicide offenders. 'Children' is the significant variable for predicting sentence length; having children has positive correlation to sentence length. This utter that there might be an aggravating factor for female famicide offenders. Forth, wife's sexual infidelity among motivations of spousal homicide can predict sentence length. However, husbands' infidelity does not show significant influence for deciding sentence length. Wives' sexual infidelity reduces sentence length to wife killers. Yet wives' sexual infidelity increase sentence length for husband killers. It tells that there is the different norm about sexual fidelity in spousal relationship and also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Keywords : Homicide inside family; Sentence length; Sexual fidelity

원고접수 : 2006년 11월 27일

심사통과 : 2007년 1월 11일